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2510호

제출년월일 : ２０２０년 9월 28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함.

2 주요내용

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,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5조의2)

3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2조

-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2,693,093천원 편성 (2020년 2,696,330천원)

다. 합 의 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원안 의결(기금 존치 연장)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0. 8.27. ~ 2020. 9.16.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별시 양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5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【관 계 법 령 】

□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42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~ ④ (생 략)

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(생 략)